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28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김선민·신장식·조 국

김준형 • 이해민 • 김재원

박은정 · 차규근 · 강경숙

정춘생 · 황운하 · 서왕진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급여의 상한액인 '기준연금액'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통해 3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역연급 수급자 중에서도 경제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함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범위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같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
- 나. 기초연금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다.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던 것을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4항 삭제 등).
- 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 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8항 신설 등).

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90이하에서 전액으로 상향함(안 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선정기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당 연도 1인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

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임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선택한 경우 (기사업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선택한 경우 포함한다)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 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를 "제5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를 "제2항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평가 등"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를 "평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를 "제2항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절차 등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를 "기초연금의"로,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을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저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행

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 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 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아

개 정

등) ① -----

-----<u>선</u>

<u>정기준액</u>-----

----.

② 선정기준액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 른 기준 중위소득으로서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 득으로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 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 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 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 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 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 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 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 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 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 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 제42조제1항 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 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 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 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

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 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 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 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 족연금일시금

-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 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 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 | 제10조 또 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 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 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 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 〈삭 제〉 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 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

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 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과 국민<u>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u> 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 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 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 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 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 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 <삭 제>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 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 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 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하 (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 연도 1인 가구의 생계 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한다.

<삭 제>

-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 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 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 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 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 금 수급권자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권자
- ⑤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한다.
-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
 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
 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

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배금액(그 밴후의 금액이 인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 <u>1. 기준연금액</u>
-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 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 <삭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 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 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 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 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 에 따른 수급권자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신 설>

-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 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 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 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 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 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 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 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 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 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 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 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 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의 수 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 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한다]

-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 작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 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 작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 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 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 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 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 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 이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

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사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 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 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 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 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 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 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 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 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 <삭 제>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 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 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 다.

-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생 략)
 -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 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 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 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 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 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 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 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

(현행과 같음) ② <u>제5조에</u>	세8조(기조연금액의	감액) ①
② <u>제5조에</u>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에
		·

<u><</u>삭 제>

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 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 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 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 렁으로 정한다.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 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 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 정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 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 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4	<u>제2항에</u>			
제9조	(기초연금	액의	적정성	<u>평가</u>)
1			<u>5</u> 년	<u> </u>
		- <u>평가</u>	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부를-----.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 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 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 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 <삭 제>

조사의	세부	절차	등에-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기초연금의-----

- 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 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 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 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 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 급할 수 있다.
-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 생하였을 것
-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권자일 것
-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 하인 사람일 것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 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

- 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 증장애인일 것
-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 생한 사람일 것
-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 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 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 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 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u>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u> <u>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u>

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